

의안번호	2217116
의 퇴 인	윤영석의원
회 답 일	2026.8.25.
추계번호	26D1145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 2(양로·요양 지원)	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가 없는 사람(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양로·요양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음. 이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·요양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·요양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양로·요양시설 외의 양로·요양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8조의2(양로·요양지원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65세 이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에게 양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현재 국가보훈부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수원 보훈원에서 양로지원을 하고 있음

[표 1] 수원보훈원(양로시설) 입소 현황

(단위: 명)

성별	정원	현원	본인							유족			
			소계	독립	국가	5.18	특수	고엽제	참전	소계	배우자	부모	(손)자녀
남	215	40	36	1	22	-	-	2	11	4	-	1	3
여		60	3	-	-	-	-	-	3	57	54	1	2
계		100	39	1	22	-	-	2	14	61	54	2	5

자료: 국가보훈부

- 또한, 이 법 제8조의4에 근거하여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고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

[표 2]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의 지급대상별 요양지원보조 비율

보훈대상자	지급대상	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조비율
○ 독립유공자 ○ 전상·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○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○ 특수임무부상자	○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자 ○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○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	80%
○ 무공·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공로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○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○ 특수임무공로자 ○ 독립·국가·5·18민주·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(참전유공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제외) ○ 국가·5·18민주·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 부모	○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자 ○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○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	60%
○ 참전유공자 ○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	○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○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	60%

자료: 국가보훈부

- 개정안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해 양로지원에 요양지원을 추가하고 지원 장소도 양로시설에서 양로·요양시설로 확대하며,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양로·요양지원을 받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요양지원과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요양지원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부재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 - 65세 이상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요양지원 대상 기준과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등급 기준 간의 관계, 국가유공자 등의 요양시설 지원 비용과 노인장기요양 수가체계와의 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부재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- 또한, 개정안의 추가지원 대상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개정안에 따라 양로지원 대상을 배우자로 확대할 경우 지원대상자 중 지원신청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 - 전체 일반가구 중 65세 이상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, 국가유공자 등 양로지원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추정되나,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원보훈원의 입소인원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

[표 3] 독거노인가구 현황

(단위: 건, 백만원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
65세 이상 1인가구	1,660,711	1,824,434	1,973,416	2,138,107	2,288,807
전체 일반가구	20,926,710	21,448,463	21,773,507	22,073,158	22,294,419
비율	7.9	8.5	9.1	9.7	10.3

자료: 국가데이터처

[표 4] 수원보훈원 입소 인원

(단위: 건, 백만원)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
지원인원	133	123	116	106	100

자료: 국가보훈부

○

Ⅲ. 부대의견

□ 해당사항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